

과 업 지 시 서

1. 적용범위

본 과업지시서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업기계 구매에 따른 납품기한, 공급 농업기계의 규격(형식)제품 납품 및 파손 농업기계의 교환 납품 일반 사항 등의 조건에 대하여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규정함에 있다.

2. 적용사항

- 가. 건 명 : 2026년 교육훈련용(임대사업 겸용) 농업기계(파이프밴딩성형기) 구입
- 나. 산출금액 : 금49,500,000원(금사천구백오십만원)
- 다. 구입내역 : 파이프밴딩성형기 1종 2대

3.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

4. 납품 및 납품완료

- 가. 납품되는 제품은 2026년도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, 납품완료시 관계 직원의 농업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, 불합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된 동일제품으로 교환 및 납품 하여야 한다.

※ 납품된 농업기계는 최초 1년간 무상 A/S를 원칙으로 한다.

- 나. 계약자는 계약한 농업기계를 농업기술센터 재무관과의 계약 기간 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(품명, 기대번호, 형식번호, 제조년도, 단가, 금액을 표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자는 규격서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, 제품의 단종 등 기타 사유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제시한 규격서의 제품보다 상위 기종으로 우수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
5. 납품장소 :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지정 장소

6. 납품특수조건

- 가. 납품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제조사의 제품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, 하자보증기간 동안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.
- 나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농업기계사후관리업(소형,중형,대형)을 등록하여야 한다.
- 다.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농업기계를 납품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 농업기계 성능 미충족, 기타 미비사항 발견,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공급업체는 무상 수리, 대체 물품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.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납품 후 즉시 장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취급설명서(매뉴얼) 납품과 교육을 무상으로 출장 지원하여야 하며, 교육은 사용자가 정확히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실시한다.
- 마. 사업의 특성상 농업기계수리 요구 시 신속한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.
- 바. 예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은 반드시 본 기계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.
- 사.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농업기계를 납품하여야 한다.
- 아. 본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농업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자. 상기 사항을 불이행 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계약 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7. 기타사항

- 가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농업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구입 장비 규격서에 기재된 농업기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 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.
 - 1) 농업기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 - 2) 시행청의 과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 했을 때
 - 3) 기타관계법령(계약조건) 및 과업지시를 위반했을때
- 다.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, 파손(불량)된 농업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, 납품후 (사용전) 파손(불량)된 농업기계가 발견될 시에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. 계약자는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 이행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

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1) 농업기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및 과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 시
- 2) 기타 관계법령(계약조건) 및 과업지시를 위반했을 때

마.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인적·물적 사고로 인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,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.

바. 기타 이견 발생 시 구매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.